## 조문별 제 · 개정이유서

1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 의결 규정(안 제8조의2조, 제14조의2제2항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(이하 "금융회사 등")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임을 명시하고, 이용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심의·의결 대상 항목도 새로이 반영할 필요

### 나. 제ㆍ개정 내용
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임을 명시
- 안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,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규정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○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 대상 항목을 명료화함으 로써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및 보안 책임성을 강화

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2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(안 제14조의2제1항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現 감독규정 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절차가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금융회사 등의 절차 준수 범위가 한정되지 않는 부 담이 컸으며, 이용 절차가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
-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 시 그 기준이 모호하며, 업무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

#### 나. 제ㆍ개정 내용

-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명시
- 기존 규정에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수립 절차를 명료화하여 절차 준수의 범위를 한정
- 업무 중요도 평가 결과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, 업무 연속성 계획,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○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명료화 및 간소화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절차 준수 부담 완화

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3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시 침해사 고대응기관의 대표평가 허용 규정 (안 제14조의2제3항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금융회사 등이 특정 클라우드서비스(甲)를 이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쳤음에도, 다른 금융 회사 등이 동일한 클라우드서비스(甲)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평 가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,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#### 나. 제 • 개정 내용

○ 안 제37조의4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(대표평가)하고, 해당 결과 를 금융회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○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대표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

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4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 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 (안 제14조의2제4항, 제14조의2제5항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기존 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시 7영업일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보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사전승인과 같이 운영되어 금융회사 등의 규제 부담 으로 작용,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#### 나. 제ㆍ개정 내용
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시,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시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품질의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토록 함
- 사후 보고시 첨부해야 할 서류 재정비(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서 추가)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○ 사후보고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 및 사업 추진의 적시성 확보 가능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5. 연구·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(안 제15조제1항제3호, 제15조제1항제5호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·개발 분야까지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개발 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므로, 이에 대한 개선 필요

### 나. 제 • 개정 내용

○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 개발 목적의 경우, 금융회사 등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 라. 입법효과

○ 금융회사 등의 연구·개발 업무 효율성 증진 및 혁신 기술 활용 활성화

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6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(SaaS)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차등 기준 마련(별표 2의2)

#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기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는 평가 항목간 유사·중복이 존재하고,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(SaaS)의 등장 및 비중요 업무에 대한 차등 고려 없이 평가 항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
- 기존 규정상 평가 항목이 개괄적으로만 서술되어 금융회사 등이 별도의 구체적 지침을 확인하거나 문의해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, 이를 규정에 구체화할 필요

#### 나. 제 · 개정 내용

- 14개 통제분야 141개 평가항목을 11개 통제분야 54개 평가항목으로 간소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(SaaS)의 적용 예외항목을 규율
- 평가항목을 필수항목과 대체항목으로 구분하여 업무 중요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
- 평가 기준 및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에 포함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○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명료화 및 간소화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절차 준수 부담 완화

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7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절차 중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규정(별표 2의3, 별표 2의4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기존 규정상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이 개괄적 으로만 포함되어 금융회사 등의 절차 준수 범위가 불명확하고 별도의 준수 지침이 필요했으므로. 이를 정리하여 규정에 반영 필요

# 나. 제·개정 내용

○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을 필수 사항 및 추가 사항으로 분류하여 규정에 반영하고,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준수 부담을 완화

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○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명료화에 따른 입법목적 달성 제고 및 차등 적용 기준 마련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절차 준수 부담 완화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8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첨부서류 및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규정(별표 2의5)

### 가. 제 · 개정 이유

○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여러 조항 및 별도 규 정에 분산·중복되어 있어 금융회사 등의 서류 준비 부담이 컸으므 로, 이를 간소화하여 정리할 필요

### 나. 제 • 개정 내용

○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위수탁 계약서상 반영해야 할 주요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여 규정에 정리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○ 중복된 서류 간소화 및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명료화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절차 준수 부담 완화

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